

10.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171호 1999. 2. 1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904호)되어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등기소등”을 “등기소”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